

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-49호

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무단시설물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2025년 03월 18일
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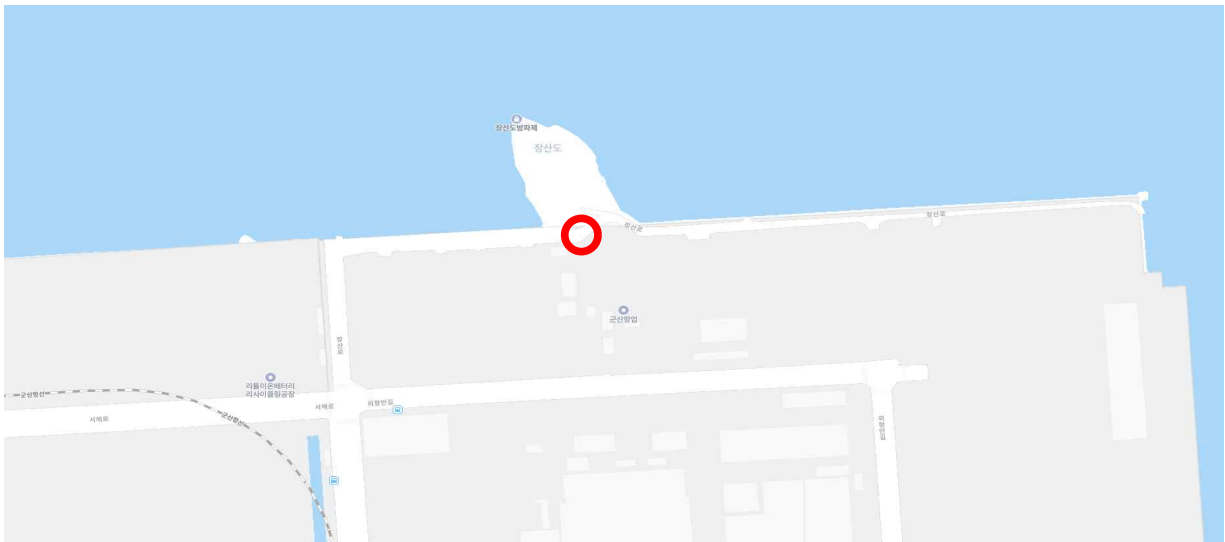
1. 공 고 명 : 군산항 장산도 인근 무단시설물(폐건축물·집기 등)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5. 3. 21. ~ 2025. 4. 4.(14일간)
3. 공고사유 :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
4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5. 공고내용 :
 - 무단방치 시설물의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항만시설의 원상회복(자진철거) 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원상회복(자진철거)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.
6. 기 타
 -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(담당 고지우, 전화 063-441-225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고 대상 적치물 사진 및 위치도 1부. 끝.

붙임 1

무단시설물 위치, 사진





소룡동 1-32